KOSHA GUIDE

C - 48 - 2022

6.1 양중기 일반안전사항

6.1.1공통사항

- (1) 기어(치차)의 마모상태와 조작레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2) 양중장비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3) 교환예비부품의 수명을 미리 점검하고, 고장난 원인, 상황, 교환방법, 기타 자료를 기록하여 차후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한다.
- (4) 부품이 파손된 것, 급격히 마모가 된 것은 교환으로 끝내지 말고 파손부분의 원인, 급격마모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질 및 형상을 검토하여야 한다.

6.2 크레인

6.2.1 크레인 안전점검 사항

- (1) 수시점검: 급유, 발열, 음향, 제어기, 브레이크, 집전장치, 안전장치, 와이어로프, 도르 래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, 불량한 것은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. 운전자의 점검은 매일 작업 전과 작업종료 후의 2 회를 원칙으로 하고, 운전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부분을 점검하여야 한다. 운전자 이외의 수리담당자는 시기를 정하여 점검하여야 한다.
- (2) 정기점검: 점검기간을 정한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조기에 노후화되고 불의의 고장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.
- (3) 현장수리 : 시공현장 수리 및 순회점검에서 발견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 및 돌발적으로 발생한 고장부분은 즉시 수리해야 한다.
- (4) 안전점검은 규정된 점검표(체크리스트)에 의하여 점검을 하고, 주로 마모, 열화경향,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의 헐거움 ·탈락 등을 점검 측정한 다음, 작동 시험후 각 부분의 이상음, 성능저하 및 발열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6.2.2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